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2023년 콘텐츠 극초기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창업 1년이하) ○ 사업목적 :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콘텐츠 초기 스타트업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발굴 및 육성 지원 ○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23. 11. 30. (협약일은 선정평가 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창업 1년 이하의 콘텐츠 분야 초기 스타트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 스타트업: 콘텐츠 창작 과정에 혁신적 요소를 더하여 새로운 사업적 접근을 시도하는 스타트업 ※ 공고일 기준, 설립일로부터 만 1년 이하 사업자(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개시일을 기준으로, 2022. 02. 23.(당일 포함) 이후인 경우 - 법인 전환 계획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선정시 협약일 전까지 법인사업자 전환, 혹은 사업종료일 이후 법인 전환 권장 ※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iminfo.mms.go.kr)에서 확인가능(협약시 확인서 제출) ※ 신청 스타트업이 단독으로 수행(컨소시엄 신청 불가) ○ 지원 우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최초·청년기업 쿼터제 실시 ※ 추진목적: 신규/청년기업의 사업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콘텐츠 산업기반 조성 ※ 적용대상 및 범위: 신규/청년 기업(하기 2개 조건 동시 충족)을 최소 30% 이상 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기업: 기존에 한 번도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에 선정된 적이 없는 콘텐츠 기업 * 청년기업: 대표자 연령 만 39세 이하 (공동대표의 경우 모두 만 39세 이하) ※ 확인절차: 사업신청서 관련서류 제출(과제개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규모 : 12개 과제 내외, 각 100백만원 이내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 극초기 스타트업 프로젝트의 사업화 자금 지원(최대 100백만원) - 콘텐츠 극초기 스타트업을 위한 스케일업 프로그램 지원 ※ 스케일업 프로그램 : 콘텐츠 초기 스타트업 육성 지원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진단컨설팅, 전문가 멘토링, 홍보, 전시 참가 등 맞춤형 지원 - 선정 과제의 특성 및 수요에 따른 필요 분야 워크숍 및 전문가 멘토링 지원 - 콘텐츠 투자분야/규모별 소그룹 IR 후속투자유치 지원(IR피치덱 작성 및 피칭 컨설팅 등) * 상기 프로그램은 운영 방향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수 스타트업(결과평가 상위 10%)에 한하여 2024년도 초기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사업(창업 1년 초과 3년이내) 선발시 서면 평가 면제 예정 *해당 내용은 운영 방향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조정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 지원금 90% + 사업자 부담금 10% 이상 (현금인정, 현물제외) ※ 총 사업비(A) = 국고 지원금(B) + 사업자 부담금(C), (사업자 부담금 비율=C/A*100) - 본 사업은 제작지원이 아닌 사업화 지원사업이므로, 본 사업기간 내 콘텐츠 제작 등 제품 완성 외에도 본격적으로 사업화(고도화, 유통, 판매·마케팅, 홍보, 후속자금 유치 등)를 중심으로 진행할 과제를 모집함
신청서 접수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기간 : 2023. 2. 22.(수) ~ 2023. 3. 9.(목) 17:00까지 ○ 접수기간 : 2023. 2. 22.(수) ~ 2023. 3. 9.(목) 17: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동시접속으로 인한 접수지연이나 첨부파일 누락 등 오류발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 e나라도움시스템 외에 타 경로를 통한 접수는 불가하며, 접수마감일 전에 여유있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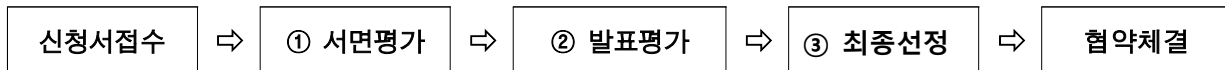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KOCCA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별첨한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 ※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문의는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고객센터(1670-9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신청기업명(극초기스타트업).zip**
 - ※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마련하여 하나의 zip 파일로 묶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약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No	파일명	제출형식	비고
1	수행계획서(사업신청서)	한글(hwp) 1부	직인본(직인 필수)
		PDF 1부	
2	과제개요	엑셀(XLS) 1부	
3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엑셀(XLS) 1부	
4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PDF 1부	직인본(직인 필수)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PDF 1부	서명본(모든인력 자필서명 필수)
6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1부	
7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PDF 1부	설립일 확인 목적 '말소사항 미포함'으로 제출
8	(해당 시) 대표자(공동대표 포함) 주민등록등본	PDF 1부	생애최초·청년기업 해당시 제출 (상기 지원내용·지원대상 참조)
9	(해당 시) 기타자료 - 기타 신청과제의 이해를 돕는 자료	PDF 또는 zip	해당 없을 시 미제출

- ※ 서면평가 통과 기업은 기업신용평가 조회를 위한 별도 서류를 다시 제출 안내할 예정입니다.
- ※ e나라도움에 한번에 업로드 가능 크기는 최대 50MB이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확인 등 마감 전일까지 여유있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경로로 접수 및 마감일 이후 접수 절대불가)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선정절차 안내



- ① 서면평가
 - 제출된 사업신청서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평가점수 70점 이상을 득한 기업에 한해 발표평가 기회를 부여함 (고득점순 지원규모의 2배수 이내)
 - 접수결과 지원규모의 2배수 미만일 경우, 서면평가를 겸한 발표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
- ② 발표평가
 - 서면평가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발표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기업에 한해 종합심의 기회를 부여함
- ③ 최종선정 : 종합점수(100%) = 서류평가결과(30%) + 발표평가결과(70%)
 - 단계별 종합점수를 환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 협약대상자가 선정됨
 - 종합점수가 동점인 경우, 발표평가 총 득점 → 발표평가의 배점이 높은 기준의 득점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함. 단, 협약포기, 해지 등을 고려하여 예비순위를 선정할 수 있음
 - 최종 선정 과제의 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한 검토 및 보완을 거쳐 최종 편성내역 확정

- ※ 평가점수는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합계점수의 평균
- ※ 필요에 따라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조건과 부합하지 않은 결격사유가 확인(발생)될 경우, 최종 선정 이후라도 협약 해약 및 선정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 협약진행 시, 서면 및 발표평가 평가위원의 사업수행 개선안(세부 예산 조정 등)을 적용한 수행 계획서 수정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특성에 따라 다른 평가절차를 거칠 수 있음

- 평가기준
 - 서면평가

구분지표	세부지표	내용	참조사항	배점
수행기관 (15점)	수행관리체계 구축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수행관리체계 마련 여부	수행계획서	10
	기관전문성	유사과제 수행경험을 감안한 전문성 확보 기업 여부	수행계획서	5
참여인력 (15점)	참여인력 확보	참여인력은 확보(정규/비정규/용역) 여부	수행계획서	5
	참여인력 참여율	참여인력의 참여율 적정성	참여인력구성표(참여율)	5
	참여인력 전문성	참여인력의 유사과제 수행경험(또는 학위) 여부	참여인력구성표(경력학력)	5
사업비 (15점)	사업비 규모	실제 소요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사업비 구성표	3
	사업비 조달계획	실제 소요 자부담금 조달계획의 구체성과 현실성	자부담금 조달계획	2
	국고지원금 편성	국고지원금 편성내역의 사업목적 부합 여부	사업비 예산편성표	10
과제 기획력 (30점)	과제 이해도	목표 시장 및 과제내용의 사업목적 부합 여부	제작계획서	10
	기획 완성도	기획안의 착수 개시가능 수준의 구체성, 현실성 확보여부	제작계획서	20
기대성과 (25점)	경제적 성과	기대되는 매출규모	제작계획서	10
	투자매력도	투자유치 가능성	제작계획서	5
	후속발전가능성	프로젝트의 사업화 연계 콘텐츠 창출 등 발전 가능성	제작계획서	10
합계				100
가점 (3점)	수상내역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스타트업콘, KNOCK '20년~'22년 수상 여부 ※ 스타트업콘: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 KNOCK: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특별상 ※ 명시된 기간 중 수상실적 존재할 시 가점 3점 부여	과제개요 양식에 체크하여 제출 (내부검토 진행)	3

- 발표평가

구분지표	세부지표	내용	참조사항	배점
수행기관 (15점)	재무건전성	기업신용데이터 정보조회	신용분석결과표	5
	기관전문성	유사과제 수행경험을 감안한 전문성 확보 기업 여부	수행계획서	5
	추진의지	수행책임자의 추진의지는 명확하고 확고한가?	발표내용	5
과제 기획력 (35점)	과제 이해도	목표 시장 및 과제내용의 사업목적 부합 여부	제작계획서	10
	기획 완성도	기획안의 착수 개시가능 수준의 구체성, 현실성 확보여부	제작계획서	15
	기획 독창성	기획된 과제의 차별성과 참신성	제작계획서	10
기대성과 (45점)	경제적 성과	기대되는 매출규모	제작계획서	20
	투자매력도	투자유치 가능성	제작계획서	15
	후속발전가능성	프로젝트의 사업화 연계 콘텐츠 창출 등 발전 가능성	제작계획서	10
ESG (5점)	일자리 창출	사업비 대비 일자리 창출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제작계획서 內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 항목	2
	지역기업(계량)	주관기관 지역기업 여부(본사 기준) : 3점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0점, 그 외 지역 3점	사업자등록증	3
합계				100

지원금 지급

-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7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점검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총 지원금의 30%) 지급

참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지원과제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제5호와 제6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 지원금 누적: 국고보조금 항목(민간경상보조)만 해당되며 포상금, 해외마켓참가지원 제외 1.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아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하임을 파악할 수 없는 자 (단,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제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전담기관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받은 자 4. 최근 3년 간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의 누적금액과 당해연도 전담기관에 신청한 지원금의 합계가 25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기 지원과제의 협약기간 종료일을 기준, 25억의 누적액은 신규 신청 보조금 합한 금액) 5.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6.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7. 전담기관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8.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지원금으로 발생한 이자, 환수금 등 전담기관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문의 : 기업육성팀 문소윤 주임 (☎061-900-6394, moonsy@kocca.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감일에는 유선문의가 많아 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e나라도움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anualList.do) - 동영상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vpDtaList.do)
콘텐츠금융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지원사업 외에도 콘텐츠기업의 투자 및 용자 유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용자 자금 유치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금융상품별 공고문을 보시고 사전상담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사업에 신청한 콘텐츠(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기획 및 제작 중인 다른 콘텐츠(프로젝트)로도 콘텐츠금융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콘텐츠금융제도(투자·용자 유치 지원)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가치평가센터(☎02-6441-3658, assess@kocca.kr) - 금융상품별 공고(https://www.kocca.kr/cop/bbs/list/B0158960.do?menuNo=2038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occa.kr) > 알림마당 > 금융지원 ※ 콘텐츠금융제도 신청 가능여부에 대해 금융상품별 담당자의 사전 유선상담 필수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 이후 협약서 '성과관리' 조항에 의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과거 3년 내에 우리원의 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우리원의 성과조사에 실적 제출이 확인되어야 함. ○ 콘진원 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

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발표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신용등록 정보 미등록 또는 지연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평가기준에 표준계약서 활용계획 포함시) 표준계약서 활용 계획을 제출한 업체는 사업종료 전 표준계약서 활용 실적을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결과평가와 연계하여 평가 예정임.
 -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5조에 의거 콘텐츠사업자에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개정(21.4.)에 따라 동 지침 제10조 제1항 제1호 바~아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아. 바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제 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 민간보조사업 수행 단계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를 운영 중이며, 신고상담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성폭력 신고상담 통합센터를 이용(*통합센터 대표번호 1670-5678)
- 지원사업 선정업체는 결과보고서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결과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 (21.1.6.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 의무 부과
 - ※ 단, 1인 보조사업자·일회성 단순 용역 제공하는 경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 의무 제외
 - * 성희롱예방교육 인정범위 : 당해연도에 실시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 법정 의무교육 등, 해외 타기관에서 이수한 성평등 교육 수료증(단, 당해연도 실시 및 법정교육 내용)
- 지원과제 수행 중 필요한 자산(PC 등)은 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에 따라 협약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서류 미제출,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7조」 근거하여, 지원금 교부신청을 할 때마다 자기부담금 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7조」 근거하여, 지원과제 수행 중 제42조에 따른 지원과제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콘진원은 수행기관에게 지원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차년도 예산 편성시 감액조치를 할 수 있음.
-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선정기업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해 정기적인 e나라도움 상시점검이 이루어짐
- 지원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계획 대비 결과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반납 미이행 시 향후 지원 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 불가함